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위·수탁 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이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문체부”가 소관 사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의 목적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문정원”에게 위탁함에 있어 “문체부”와 “문정원”的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문체부”와 “문정원”은 상호협력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 “문체부”가 “문정원”에게 위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득공제사업자의 지정 신청 접수, 지정 사항 등록 및 관리
 2. 사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3. 국세청이 요청한 소득공제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 제공
 4.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홍보 및 관련 조사·분석의 수행
-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와 “문정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문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의 개정 전까지 사업의 위·수탁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하여 재협약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문정원”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다음 연도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문체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 연도(2023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문정원”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문체부”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문정원”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문정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변경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문체부”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문정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문정원”은 위탁사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문체부”的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편람 개정 시에도 “문체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문정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문정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자의 채용 및 보호 등)** ① “문정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문정원” 채용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체부”的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② “문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협약 시에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문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인사·노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의 1(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문체부”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문정원”에게 2차례 이상 나누어 지급하되, 그 금액은 “문체부”的 예산과 “문정원”的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 ② “문정원”은 사업비를 “문체부”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문정원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③ “문정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 2(사업비 집행 기준)** ① “문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8조의 1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정산 및 반납)** ① “문정원”은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사업 종료시 발생이자를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문체부”에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 등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문정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문체부”的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문체부”는 “문정원”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 및 시정 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문체부”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문정원”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감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운영실태를 지도·점검 및 감사할 수 있다.
- ③ “문체부”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자료·정보의 제출을 “문정원”에게 요구하거나 “문체부”的 소속직원 또는 “문체부”가 지정하는 자가 위탁사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정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문체부”는 지도점검 결과 “문정원”的 위탁사무 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체부”는 문서로 “문정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문정원”的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무를 정지하거나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 ⑦ “문체부”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지도·점검 및 감사 결과와 “문정원”的 협조에 대한 노력여부를 재협약 시에 가감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 ① “문체부”와 “문정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문정원”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문체부”는 정기 성과평과의 경우 매년도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종합 성과평가의 경우 위·수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문정원”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성과평과의 결과는 재협약 체결 여부 및 차년도 사업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문정원”은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문체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행의 보증은 “문정원”이 기타 공공기관이며, 별도의 자체수입이 없음을 고려하여 협약이행을 보증하는 각서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문정원”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체부”에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문정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정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문체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결과는 “문정원”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문정원”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문정원”的 귀책사유로 “문체부”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문정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체부”的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 포함)를 즉시 “문체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문체부”는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문정원”과의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경우 “문체부”는 위수탁 사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수탁기간, 적정 배치인력 및 조직, 협약금액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문체부” 또는 “문정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등 효력은 “문정원”에게 해지 등 통보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1. “문정원”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문정원”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문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문체부”的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문정원”이 “문체부”的 동의 없이 “문체부”的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 수탁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문정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근로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문정원” 또는 그 임직원이 수탁받은 사무의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문정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문정원”的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문정원”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2. 정책 변화, 관계 법령 제·개정, 예산 축소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13. 이 외 중대한 협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③ “문체부”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문정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문정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2항 제1, 11, 1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④ “문정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문체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 조치사항) “문체부”와 “문정원”은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정산 및 반납, 위법사항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고발, 위탁 취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수탁재산의 반납)** ① “문정원”이 수탁기간 중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물품 포함)은 수탁기간 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문체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문정원”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반납할 경우 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함께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문정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와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문체부”的 비밀사항, 위·수탁사무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 법규를 따라 상호 협의하되, 원만하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할법원은 “문체부”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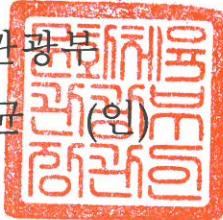
-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에 따른 위수탁기간 또는 제16조에 따른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도·점검 및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규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문체부”와 “문정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보 군



수탁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홍희경

